

발신: 세무총국 (재무부)

일자: 2021/11/17

공문번호: 4423/TCT-CS

수신: - 호치민시 세무국

- 한인상공인연합회(47 Nguyen Cu Trinh, D.1, HCMC)

주제: 세무정책(코참 영수증 인정 관련)

세무총국은 한인상공인연합회 (이하 코참으로 약칭)의 2021/5/24일 2103/HHTMHQ호 공문 및 2021/10/6일 2134/HHTMHQ호 공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한다:

- 법인세법의 몇 가지 조항을 보완하는 2013/6/19일 제 32/2013/QH13호 법의 제 9조 제 2항에 따르면:

*“제 9조. 법인세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된 비용 및 공제되지 않은 비용*

*2. 법인세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비용은:*

...

*n) 후원금, 다만 다음 분야에 후원하는 후원금 제외: 교육, 의료, 과학 연구, 천재 지변 피해 극복, 사랑의 집 짓기, 오지에 후원하는 정부의 프로그램에 후원하는 후원금 등”*

- 법인세법을 시행 안내하는 78/2014/TT-BTC시행령 제 6조를 보완하는 재무부의 2015/6/22일 96/2015/TT-BTC시행령 제 4조에 법인세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된 비용 및 공제되지 않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:

*“제 6조. 법인세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된 비용 및 공제되지 않는 비용*

- 1. 이 조 2항에 언급되는 공제되지 않는 비용을 제외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기업이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.*

*a) 기업의 생산, 영업활동과 관련된 실제 발생 비용.*

*b)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영수증, 증서가 있는 비용.*

*c) 2천만동 이상(부가세 포함) 거래하며, 영수증이 있고 무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용.*

*무현금으로 결제 증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.*

...

- 2.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:*

2.1. 이 조 1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되지 않은 비용.

...

2.14. 연합회 (법규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)의 기금에 연합회의 규정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비용”.

- 연합회의 납부하는 연회비에 대해서 재무부는 일본기업연합회에 대한 회신 2016/11/4일 15725/BTC-CST호 공문(첨부)을 발행했다. 후원금에 대해서는 2013/6/19일 32/2013/QH13법의 제 9조 제 2항의 규정 및 기타 지침문서에 따라 시행한다. 호치민시 세무국에 법인세법에 대한 법률문서 또는 코참연합회의 실제 활동상황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를 요청한다. 호치민시 세무국 및 코참연합회가 알 수 있도록 상기와 같이 세무총국은 통보한다.

수신처:

- 상기와 같이
- Vu Xuan Bach부국장 (보고용)
- 재무부 (세무정책국)
- 세무총국
- 문서실 보관

세무총국 대표

세무정책국 대신

부국장

MANH THI TUYET MAI